

등록번호	도심재생과-3156
등록일자	2016.3.16.
결재일자	2016.3.16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★주무관	도시계획팀장	도심재생과장	도시관리국장
라전희	이형순	代이형순	03/16 이진형
협 조			

「세운속진지구 3-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」 관련
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의면 처리 검토보고



도시관리국
도심재생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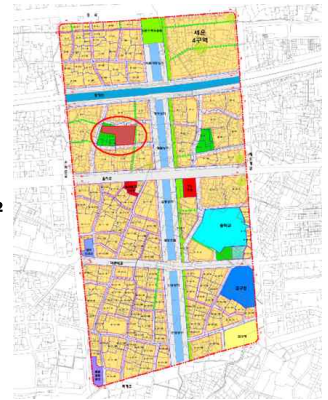
세운속진지구 3-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

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의견 처리 검토보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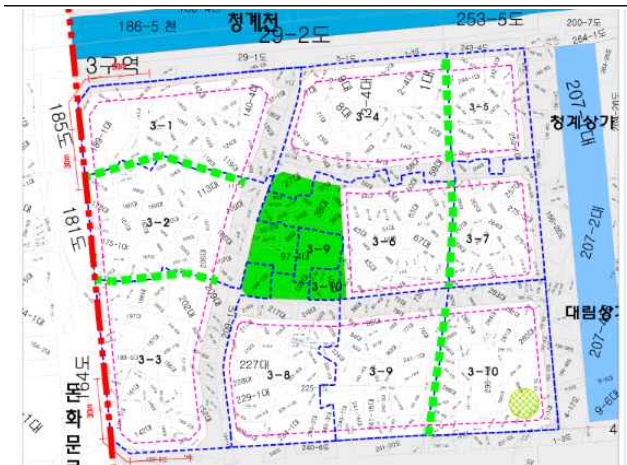
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3-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1항』 규정에 따른 주민공람 실시결과 제출된 공람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코자함. (법령상 불채택이 명확하므로 공람심사위원회 개최 생략)

II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세운3-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- 사업위치 : 중구 입정동 97-4번지일대
- 건립규모 : 지하6/지상20층 숙박시설 연 36,429.51㎡
- 시행자 : 더센터시티(주) 대표 선권수
- 추진경위 :
 - 2014.03.19. 촉진계획 변경결정(서고시 2014-119호)
 - 2014.12.09. 세운활성화 자문단 자문
 - 2014.12.22.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
 - 2015.02.24. 서울시 문화재심의
 - 2016.02.22. 사업시행인가 신청



■ 토지이용계획 및 조감도





주민공람 결과

공람개요

- 공 고 명 : 세운촉진지구 3-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안)
- 공람기간 : 2016.02.26.~2016.03.11.(14일간)
- 공람대상 :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

공람결과

- 주민의견 제출 : 1건 (오승준, 입정동 31-2호 토지등소유자)
- 주요의견 : 세운3-2와 3-6구역 경계부에 위치한 본인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3-6구역 사업시행을 위한 보상업무 추진시 구역밖 잔여건축물 (3-2구역내)에 대한 존치 또는 확대보상 등 명확한 처분대책 마련 요구, 미대책시 사업반대함.



검 토 결 과

관련규정
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1항 내지 3항
 - 주민공람 후 제출의견에 대한 채택여부를 심사하여 통지함.
- 도시관리계획 공람의견 심사위원회 운영방안(도심재생과-5543, 2015.5.18.)
 - 제출된 의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사안에 따라 공람심사위원회를 개최함.

검토결과

- 제출의견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여 검토, 처리되어야 할 내용으로써, 구역밖 건축물의 본래 기능을 다할수 없게 되는 경우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구역내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확대보상은 가능할 것이며 이는 향후 사업시행자와 협의 결정할 사항으로,
-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현시점에서 채택 또는 불채택 여부 등의 심사는 불필요할 것임.

V

처 리 의 견

- 제출의견이 향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사업시행자와 협의결정할 사항으로써, 법령상 불채택 여건이 명확함에 따라 의견심사가 불 필요하여 공람심사위원회 개최를 생략코자 하며,
- 공람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인에게 별도 회신코자 함.

붙임 1. 공람의견서. 끝.